

201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

올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종 농림사업과 관련, 낙농육우 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을 알리고자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. 본내용은 지면관계상 요약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는 농가는 농식품부나 시군축산담당과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.

I. 사육기반확충

1. 생산기반 확충사업

1)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유통비 지원

① 지원자격 및 요건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 농·축협, 한우회·낙우회 등
- 재배농가 : 사료작물 재배 희망농가

재배농가 유형

- 지역 농·축협 등 경영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농가
- 파종,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·축·낙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시범포로 운영하는 지역의 농가
-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,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농가
-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농가
- 경종과 축산을 함께 하는 복합영농 농가(겸업농가)

- 축산농가 :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축산업 등록농가, 섬유질가공사료업체, 지역 농·축·낙협, 영농법인, 한우회, 낙우회 등

② 지원대상

- 동·하계 사료작물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용, 유통활성화를 위한 장거리 운송비

③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사일리지 제조비 : 비닐랩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반하는 비용 (하계작물은 수확 후 트렌치 사일로 보관분 포함)
- 유통비 : 생산된 사일리지를 타 시·도로 판매할 경우 장거리 운송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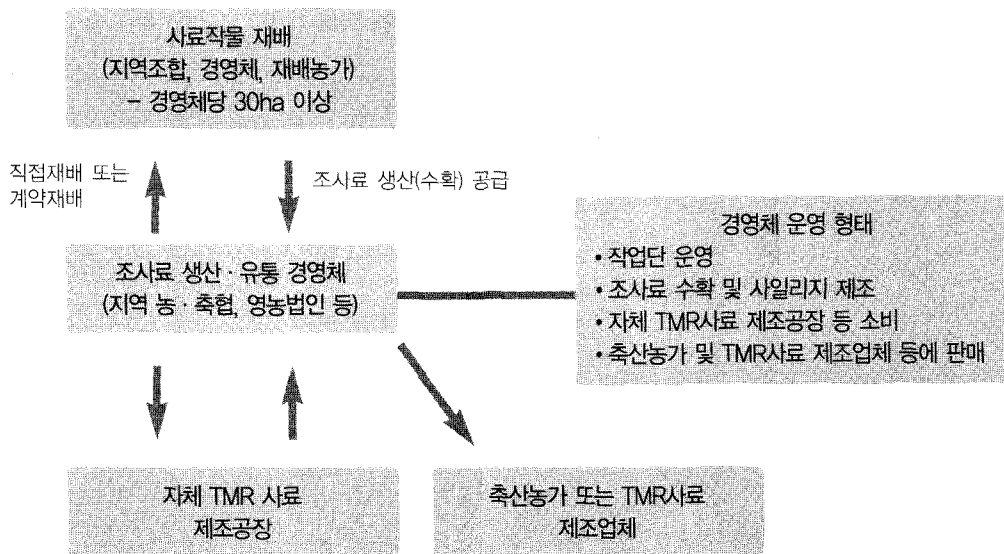
④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사일리지 제조비 : 보조 100%(축발기금 보조 60%, 지방비 40%)
- 유통비 : 축발기금 보조 50%, 자부담 50%

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일리지 제조비 : (동계 사료작물) 60천원/톤, (하계 사료작물) 20천원/톤
 - 시·군에서는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시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로 하여금 중량을 계근토록 하고,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지급해야 함
- 유통비 : 실 운송비의 50% 이내에서 지원하며, 지원 상한액은 30천원/톤 임

조사료 생산·유통체계 및 운영방법 예시



- 경영체의 사료작물 사일리지 생산·공급계약 체결
 - 사료작물 재배농가는 경영체와 생산 및 단가계약 체결
 - 경영체는 보리·호맥 등 사료작물 따라 재배농가와 계약된 가격을 축산농가에게 알려서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
- 경영체는 재배농가 소재 시·군에서 선정(지방비 확보)
- 공급가격은 kg당 110원 내외로 하여 시·군과 경영체가 협의하여 결정
- 재배농가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수준의 조사료를 생산하여야 하고, 재배 및 수확과정에서 부패 등 제품이 변질되어 사료적 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 가격결정 및 인수 제외
- 축산농가 소재 해당 시·군에 재배농가 및 경영체가 없는 경우 인근 지역 경영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 체결
 -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공급대금을 받아 재배농가에게 지급
- 경영체 운영방법

>> **농림수산업 시행지침** >>

-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와 생산·공급 계약 추진
- 경영체는 사료작물을 예취·곤포 사일리지를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운송
-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·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일체 또는 부분 위탁 가능
- 자체 보유장비가 없는 경우 기계·장비는 임차하여 사용하고, 시·군 농업기술센터는 보유한 장비를 경영체에 우선 임대
- ※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임대 추진

2)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

① 지원자격 및 요건

- 개별농가 : 한우·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 중 축산업등록농가, 15ha 이상 규모의 경종농가 (조사료 사일리지 생산 시에 한함)
- 영농조합법인, 농업법인회사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- 농·축·낙협 :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·축협, 한우·낙농조합

② 지원대상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비닐랩을 이용한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
 - 기계·장비 보조지원 대상에서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
- 개별농가 :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기계·장비, 시설 등
 -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
 - 사일로유형 : 철근콘크리트 트렌치, FRP 사일로 등
 - 사일로용량(1기당) : 50톤(78m³)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
 - <시험사업> 섬유질사료가공공장(TMR)의 사일로 용량은 1기당 500톤을 기준으로 하되 주변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(절단기능, 소포장기계 등 포함)
 - 기타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기계·장비 등
 - 동력원 : 트랙터, 경운기 등
 - 부속작업기 : 경운·쇄토기, 파종기, 비료살포기, 농약살포기, 퇴비살포기, 예취기 등
 - 처리장비 : 수확기, 집초기, 절단기 등
 - 운반장비 : 로더, 트레일러 등
 - 이용장비 :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
 -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(50평 이내)

③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·장비 구입비
 - * 공사가 진행 중인 간척지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통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우 기존 보유한 기계·장비를 활용토록 하고, 기계·장비 지원을 제한

④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조사료 생산·유통 경영체 : 축발기금 보조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

- 개별농가·섬유질사료가공공장 : 용자 80%(연리 3%, 3년 거치 7년 상환) 자부담 20%
- * 영농조합법인 및 농·축협에서 용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개별농가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

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보조지원 : 사업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(150백만원)를 산정한 것이며, 재배면적이 15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
- * 예시)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(100백만원)하여 지원금 산정
- 용자지원 : 기 용자지원분(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)을 포함한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
 - 개별농가(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) : 5억원 이내
 -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% 이내,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% 이내

3)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

① 지원자격 및 요건

- 축산업등록농가, 한우회·낙우회 등 협업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 농·축협

② 지원대상

- 사일리지용 비닐 구입비 등

③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볏짚 등 조사료로 활용하기 위한 처리비
- 볏짚 등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비닐랩 사일리지를 제조할 경우 비닐 구입비 지원
 - 처리규격 : 사일리지 1롤(500kg) 당 4겹 기준(추가비용 자부담)

④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축발기금 보조 30%, 자부담 70%

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·공급 가능
 - 단,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
 - ※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(준비사항, 공급단가 계약체결, 기술지도 등)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, 시·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

4)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

① 사업대상자

- 축산업등록농가, 한우회·낙우회 등 협업체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한우·낙농조합 및 지역 농·축협

② 지원자격 및 요건

- '2)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'과 동일함

③ 지원대상

- 초지조성 :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 조사에 따라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,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
- 기반시설 : 소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

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〈초지조성〉

- 초지조성 : 초지조성(경운·불경운·임간초지)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·자재대·측량수수료 등 지원
 -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‘초지조성단비’를 기준으로 하고,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·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
 - 동일한 용도(시설)에 대해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에서 중복지원 불가
-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
 - 경운초지 : 토지등급이 1~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불경운초지 : 토지등급이 2~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,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
 - 임간초지 :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
 - 토지등급별 판정기준
- 초지조성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·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,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(다만,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)
-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
 -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, 축사부지 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
-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·중급초지를 중·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 지원

〈기반시설〉

- 용수개발, 전기시설, 진입도로·목도 개설
 - 용수개발 :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,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
 - 전기시설 :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(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)
 - 진입로(목도)개설 : 초지의 진입도로·목도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,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

- 초지·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
 -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·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,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등급	경사도	유효토심	자갈함량	토성
1급지	20° 이하	100cm	5% 이하	사양토, 양토
2급지	21 - 30	99 - 50	6 - 20	식양토, 식토
3급지	31 - 35	49 - 30	21 - 30	사토, 중점토
4급지	36 이상	29 이하	31 이상	입사질토

- 지원기준 : 총 토지면적이 2ha 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~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
- 시장·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

○초지용 목책설치

-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제고

- 지원기준 : 3ha당 1km 설치하고, 2ha 이상 초지조성시 지원

- 대상시설

-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(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)
- 철재앵글,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, 철선 등의 시설
- 목구 내 수조 및 저수탱크

⑤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○초지조성 : 축발기금 보조 50%, 축발기금 용자 50%

○기반시설 : 축발기금 용자 80%, 자부담 20%

※ 용자조건 : 연리 3%, 3년거치 7년 상환

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용자금 지원기준은 '2)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'과 동일함

○화학비료 구입비는 지원 제외(퇴·액비 활용)

○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,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

5)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

① 지원자격 및 요건

○ '2) 조사료용 기계·장비 지원'과 동일함

② 지원대상

○옥수수, 청보리, 호밀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아라이그라스, 총채벼 등 사료작물·목초종자

③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④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○축발기금 보조 30%, 자부담 70%

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청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한함

○종자구입비는 농가에서 자가 생산한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지역 농·축협 및 낙농육우협회 등을 통해 구입한 비용(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)을 지원

○농가의 종자신청이 시·군, 지역 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·확인

>>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>>

○경관보전직불제에서 직불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종자공급 절차

종자신청

• 사업대상자가 시·군,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종자공급

• 국립종자원,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보조사업대상자에게 공급

종자대 지급

•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 전 지역농·축협조합 등에 납부

•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확인후 보조금 지급

○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

- 자담분 :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 전 지역조합 및 낙농육우협회에 납부

- 보조분 :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(인수증 또는 현지확인)하고, 농협중앙회(도지회)에 촉발기금 지급요청

- 지역조합과 낙농육우협회에 이종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

2.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

1) 사업대상자

○개별시설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

○공동자원화시설

- 퇴·액비화 : 농업법인(영농법인, 농업회사법인), 지역 농·축협

- 에너지화 : 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,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

○정착촌구조개선 :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(영농조합법인 등), 축산농가, 한빛복지협회, 지자체

○액비저장조시설 : 전문유통주체, 축산·경종농가

* 전문유통주체 : 액비 수거·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는자[농업법인, 지역 농·축협,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, 살포장비를 보유한 작목반]

○액비유통센터 : 지역 농·축협, 농업법인, 민간기업(상법상 법인)

* 사업대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지원, 기존 액비유통센터 등도 법인이 아닌 경우 법인 설립 후 액비살포비 등 지원

○액비살포비 : 전문유통주체

○액비성분분석기 :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

2) 지원자격 및 요건

○개별시설

-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, 축산단지, 축산계열사업주체(소·돼지·닭), 농업법인, 농·축협

* 신고규모 미만 소규모 농가 : 액비저장조 및 퇴비사 지원

* 공동퇴비장 : 가축 분뇨만을 이용하여 퇴비화 하고 있는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, 퇴비 생산 업체(영농조합법인)

○공동자원화시설

- 퇴·액비화 :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·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·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
- 에너지화 :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·군 중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(70% 이상)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·이용 및 퇴·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대상자

○정착촌구조개선

- 전국 한센병 정착촌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·법인체 등

○액비저장조시설

- 전문유통주체 :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,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
- 축산·경종농가 :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거나, 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에 위임한 농가
 - ※ 액비저장조시설 설치시 악취제거, 병원균 사멸 등을 위해 고온 호기성 처리 방법으로 유도하고 우선지원

○액비유통센터

- 액비 살포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하고 경종·축산농가와외의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

○액비살포비

- 시장·군수가 구성·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,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

○액비성분분석기

- 액비성분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

○공동 적용사항

- '10년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 중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은('12년 해양배출 전면 금지 등 시급성을 감안' 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실적 6개월 이상 적용)은 공동자원화시설만 적용

3)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

○개별시설 : 가축분뇨처리 시설·장비 구입비

- 퇴비·액비화시설 : 퇴비화 시설(건조식·통풍식·교반식 등), 액비화시설, 퇴비사, 건조장, 젖소 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, 액비화 전처리시설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-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(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·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)

>>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>>

- 정화방류시설 :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
- 부대 기계·장비 : 왕겨분쇄기·왕겨팽연화 장비, 분뇨운반탱크(암롤박스), 축분발효기계·장비, 축분이송스크류, 고액분리기, 퇴비·액비살포장비(단, 트랙터, 경운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), 약취제거 장비, 정화방류수 탈색장치, 바큇카, 암롤카, 축분·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
- 공동퇴비장 : 교반기 등 퇴비화 장비, 후숙·제품보관 창고
- ※ 다음 시설·장비는 개별농가 지원 제외 : 바큇카, 암롤카, 축분·액비운반차량, 스키드로더, 축분퇴비포장기, 공동퇴비장,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

○공동자원화시설

- 퇴·액비화 : 가축분뇨 퇴비·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·장비
- 에너지화 :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·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·장비(단, 사업비 중 5%는 상용화기술 연구개발비로 사용)

○정착촌구조개선 :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

○액비저장조시설 :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(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) 및 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

- 고정식 액비저장조(200톤 이상 등) 여러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(1단계 → 2단계 → 3단계 등)하도록 권장
- 대규모(200톤 이상)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·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(다만, 지방비를 시·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)
- 소규모(10톤 내외 규모)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액비유통센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시설 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(예 :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17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)

○액비유통센터 : 바큇카, 액비살포 차량(트랙터 포함), 액비살포기,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·운반·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

○액비살포비 :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

○액비성분분석기 :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

내역사업명	국비 보조	지방비	국비 융자	자부담	용자조건
개별시설	30	20	50		10년(3년거치)
공동자원화시설					7년(균분상환),
- 퇴·액비화	50	30	20		연 3%
- 에너지화	30	30	20	20	(민간기업 등 4%)
정착촌구조개선	70	30			
액비저장조시설	30	50		20	
액비유통센터	40	40		20	
액비살포비	50	50			
액비성분분석기	50	50			

4) 지원형태(조건) 및 사업 의무량

○재원 :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)

○지원비율(%)

- * 대규모(200톤 이상)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 시·도에서 지방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음
- *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용자금은 조속히 반납(다만, 공동자원화시설 용자금은 대체 불가)
- * 공동자원화시설(에너지화)은 지방비의 50% 이내에서 민간기업이 투자 가능

5)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사업비 산정기준

(단위 : 천원/㎡)

- 개별시설,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 ㎡당위 면
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·적용

축종	한·육우	젖소
단가	30	35

- ※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(관리사, 창고면적은 제외)
- ② 젖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음
-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㎡당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
-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
- ⑤ 2004.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안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%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·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(창고형 건물은 제외)
 - 단,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도액에 관계없이 시·군 자율적으로 지원 가능
- ⑥ 한센 정착촌 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·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
-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·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(축사 ㎡당위면적당 사업비 기준) 초과 시 축사 ㎡ 당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

○사업비 지원 한도액(개소당 기준)

(단위 : 백만원/개소)

구분		한우	젖소
개별시설	개별농가	200	
	법인체 등	800	

* 공동퇴비장 : 사육두수에 상관 없이 50백만원/개소

공동자원화시설		
- 퇴액비화	4,000(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, 100톤 초과는 2천만원 이내 적용)	
- 에너지화	7,000(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량 기준 톤당 7천만원 이내 적용)	
정착촌구조개선	개별시설에 준함	
액비저장조설치	17(200톤 규모기준, 폭기·교반 시설 포함)	
액비유통센터	200(최초 지원시)	
액비살포비	200천원/ha (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(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))	
액비성분분석기	24	

- ※ ① 사업비에 설계비·공사감리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
-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
- ③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(폭기·교반 시설 포함) 1기당 지원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,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
 - *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·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지원 가능
- ④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,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
- ⑤ 액비유통센터는 액비살포 실적 등을 평가하여 1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

○부대 기계·장비의 지원 한도액

- 가축분뇨 퇴·액비처리 장비 : 10백만원 이내(다만,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)
- 정화방류수탈색장치 : 30백만원이내
- 가축분뇨 운반·살포용 차량 : 80백만원
-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: 30백만원
- ※ 고액분리기의 경우 한국축산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(책자는 별도 제공)

3. 낙농체험 관광사업

1) 지원자격 및 요건

- 낙농경력 5년 이상인 낙농가 또는 낙농후계자로서 목장환경이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목장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낙농가
 -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'축산업의 등록대상'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는 제외

2) 지원대상

- 체험시설설치 : 관람용 트레일러, 치즈체험장 및 제조설비 등
- 환경개선 : 사용자 편의시설, 진입로 및 주차시설 포장공사 등
- 프로그램 개발 : 체험목장 연수교육, 홈페이지구축,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

자금지원 용도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목장 관람용 트레일러 트레일러 제작 • 체험객 편의 시설(휴게공간, 옥외 화장실 등) 공사 • 국내·외 낙농체험목장 연수교육 • 기타 낙농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치즈 체험장 건립 또는 치즈 제조설비 구입 • 진입로 확장(포장) 또는 주차장 공사 • 소비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
---	---

3)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낙농체험관광목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험시설 설치비, 환경개선비, 체험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하여 용자 지원

4)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조건 : 용자 100%(무이자, 3년거치 7년 균분상환)
- 10년 사업지원 개소수 및 금액 : 4개소 600백만원

5)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개소당 기준 지원금액 : 150백만원
- * 지원 신청내역을 감안하여 기준 한도액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(개소수, 지원금액 등)

II. 생산 및 유통개선

1.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

1) 지원자격 및 요건

- '06.1.1 이후 축산업(소 사육업, 양돈업, 양계업, 오리사육업, 낙농업)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제외 (축산업 등록제 기준). 다만,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, 인수한 경우에는 그 가축사육시설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

2) 지원대상

- 사업내용 : 축사의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
 - *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
 - *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.
 - 한(육)우 : 축사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, 소독·환기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·습도 조절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 - 양돈 : 축사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, 소독·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·습도 조절장치 등), 폐사축 처리시설
 - 모돈 번식전문농장 : 축사 및 내부시설, 관리자, 창고 등
 - ※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 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,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축시 반영하고,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,
 - ※ 제주도 돼지고기 수출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
 - 양계·오리 : 축사(무창 또는 개방) 및 내부기자재(급이·급수·환기 시설(공기정화기 등), 온·습도 조절장치, 계란 세척기 등), 계란 냉장보관창고, 폐사축 처리시설

>>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 >>

- 낙 농 : 축사, 착유시설, 디지털 유량계, 냉각기, 폐사축 처리시설 등(로봇착유시설 제외)

3)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 한우, 돼지, 닭, 오리, 젖소의 축사 및 사육시설

4) 지원형태 및 사업량

○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

○ 보조 30%, 용자 50%(연리 3%, 3년거치 7년상환), 자담 20%

* 용자 및 자담은 지방비로 대체가 가능함

○ 사업기간 : 2년차 사업(1년차 50%, 2년차 50% 분할 지원)

<2010년도 예산안 내용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사업량(개소)	사 업 비				지방비 (-)	자부담(20%)
		사업비 합계	예산액				
			계(100%)	보 조(30%)	용 자(50%)		
계	395	135,900	108,728	40,790	67,928	-	27,182
1. 한(육)우	140	31,115	24,892	9,352	15,540	-	6,223
2. 양돈	150	58,500	46,800	17,550	29,250	-	11,700
-모돈번식전문	3	9,000	7,200	2,700	4,500	-	1,800
3. 양계	51	22,609	18,087	6,783	11,304	-	4,522
4. 오리	5	2,561	2,049	768	1,281	-	512
5. 낙 농	46	12,125	9,700	3,637	6,063	-	2,425

주) 예산액은 1년차에 지원사업비의 50% 적용

5)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구분	사육시설 면적당(m ²) 지원한도액	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	개소당 사업비	
			지원한도액	총사업비
한(육)우	216천원/m ²	-	200백만원	250백만원
양돈	500천원/m ²	20백만원	900백만원	1,125백만원
모돈번식전문농장	500천원/m ²	20백만원	2,400백만원	3,000백만원
양 계	산란계	20백만원	1,400백만원	1,750백만원
	육 계	20백만원	700백만원	875백만원
오리	304천원/m ²	20백만원	700백만원	875백만원
낙 농	185천원/m ²	-	200백만원	250백만원

주1) 지원한도액은 보조+용자의 합산액이며, 총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

주2) 낙농분야의 경우 개소당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, 축사시설과 착유시설 등을 구분하여 개별 시설별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(별표 2)에 의한 시설별 지원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2. 축산종합지도(HACCP)지원사업

1) 지원자격 및 요건

○사업대상자의 지원자격

- 소사육농가 : 축산업(소사육업)을 등록하고 한·육우 사육규모 50두 이상인 농가, 젖소(착유)의 경우 두수와 상관없이 1일 평균 산유량 1,000kg 이상인 농가
- 돼지사육농가 : 축산업(양돈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(종돈장,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)
- 닭사육농가 : 축산업(닭사육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,000수 이상인 농가
- 오리사육농가 : 축산업(오리사육업)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0,000수 이상인 농가
- 식육판매업소 : 영업장의 면적이 33.0㎡ 이상인 업소
- 축산물운반업, 축산물보관업, 집유업
- 사업대상 우선순위 부여 : 사육농가의 경우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, 사육규모가 보다 큰 농가, 영업장의 면적 또는 규모가 보다 넓거나 큰 영업자를 우선순위로 대상자 선정
- 시·도는 사업대상자 수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
 - * 사업대상자(사육농가) 선정시 인근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

2) 지원대상

- 사업대상자 중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

3)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○아래 내용을 포함한 HACCP 컨설팅 실시

- 영업자 및 종업원 등 HACCP 교육
- 사육농가의 경우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
- 영업장(판매, 보관, 운반, 집유)의 경우 표준위생관리기준(SSOP) 작성·운용
- 개별 농장·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작성·운용 지원
 - 위해요소 분석, 중요관리점 설정, 허용한계치 설정, 감시관리체계, 개선조치, 검증방법, 기록유지 등

4)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

- 지원기준 : 개소당 8백만원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 - 사업 완료시점은 HACCP 지정 신청시까지 ☺